8. 수지제품 포장원에서 발생한 다발성골수종(형질세포종), 갑상선유두암

성별	남성	나이	만 56세	직종	수지제품 포장원	직업관련성	낮음

1 개 요

근로자 ○○○은 1999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18년 8개월간 □사업장에서 각종수지제품의 포장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년 7월에 다발성골수종(뼈 조직검사 상 형질세포종으로 확인됨)과 갑상선유두암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업무 중 합성수지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상기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여 2018년 7월 31일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,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3월 10일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.

2 작업환경

근로자 ○○○은 고등학교 중퇴 후 1982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인천에 소재한 가구공장에서 나무를 깎는 작업을 하였다. 이 기간 동안 접착제를 취급하는 등 화학물질 취급은 없었다고 하였다. 1985년부터 1987년까지 공군 취사병으로 군복무 후 1987년에 6개월간 포천에 소재한 모피공장에서 소금에 절였다가 말린 소가죽을 칼로 재단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. 이후 □사업장에 입사 전까지 벼농사를 하였는데, 무공해기법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약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. 근로자는 1999년 10월에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8년 8개월 동안 수지제품 포장업무에 종사하였다.

3 해부학적 분류

- 림프조혈기계암. 기타암

4 유해인자

- 화학적 요인

5 의학적 소견

근로자 ○○○은 의무기록에 따르면, 일주일 전부터 발생한 간헐적 복통으로 동네병원에 내원하였고, 복부 및 골반 전산화단층촬영에서 악성 골종양 또는 뼈 전이가 의심되어, 2018년 7월 6일에 대학병원에 전원되었다. 이후 다발성골수종(뼈 조직검사 상 형질세포종으로 확인됨)과 갑상선유두암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다발성골수종의 치료를 위해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를 받았고, 2019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, 현재는 대학병원에서 추적관찰 중이라고 하였다.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과 2008년부터 2018년 일반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, 근로자는 비만(체질량지수약 30 kg/m2)하였고 2010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치료 중이었고 2017년 특수 건강진단에서 흥부 X-선 검사 상 양측 횡경막이 거상된 소견이 관찰되어 C2 판정을 받은 바 있었다. 그 외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정상이었다. 근로자는 2남 5녀 중 여섯째로 다발성골수종 및 갑상선암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다고 진술하였다. 흡연은 하지 않았고, 음주는 2회/월, 소주 2잔/회 또는 맥주 2병/회 한다고 진술 하였다.

6 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(남, 1965년생)은 만 56세가 되던 2018년 7월에 다발성골수종과 갑상선유두 암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1982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인천에 소재한 가구공장에서 나무를 깎는 작업을 하였다. 1987년에 6개월간 포천에 소재한 모피공장에서 소금에 절였다가 말린 소가죽을 칼로 재단하는 업무에 종사 하였다. 이후 □사업장에 입사 전까지 벼농사를 하였는데, 무공해기법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약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하였다. 근로자는 1999년 10월에 □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8년 8개월 동안 수지제품 포장업무에 종사하였다.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으로, IARC에서 인체 발암성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한 원인은 1,3-butadiene과 pentachlorophenol에 있고, 근거가 제한적이라고보고한 원인은 benzene, ethylene oxide, styrene, 1,1,1-trichloroethane, X-radiation, gamma-radiation에 있다. 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에 따르면, 근로자의 상병과 관련 있는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.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. 끝.